

Yeosu Web Contents

2024년 10월 04일 21시 31분



목차

목차	2
민원사무편람 및 서식 - 전체	3
비료생산업폐업신고	3

비료생산업폐업신고

작성일 2017.07.04 조회수 254 수정일 2023.12.04 00:00
10:40

- ✓
민원사무명
비료생산업폐업신고

- ✓
민원내용
비료생산업자는 등록된 사항이 변경되었거나 폐업하였을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- ✓
관계법령
비료관리법 제11조4항, 시행규칙제8조

- ✓
구비서류
비료생산업등록증 1부

- ✓
처리부서
농업정책과

- ✓
협의부서

- ✓
접수
여수시 농업정책과

- ✓
수수료
없음

- ✓
처리기간
즉시

- ✓
기타사항

- ✓
흐름도
신고서작성 - 처리

- ✓
기타참고사항

첨부파일

[전체\(zip\)다운로드](#)

 [별지 제12호서식] 비료생산업(폐업, 휴업) 신고서.hwp (294 hit/ 40.0 KB) ↓

[미리보기](#)

[목록](#)

COPYRIGHT © YEOSU-CITY. ALL RIGHTS RESERVED.

(<http://www.yeosu.go.kr>)

Yeosu Web Contents

